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3. . . (제 회)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장관)
제출 연월일	2023. . .

법제처 심사 전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찰의 학교폭력 대응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05명(경감 12명, 경위 26명, 경사 67명)을 증원하고, 경찰청의 국제협력 정책 및 안보수사 내실화를 위하여 소속기관의 정원 88명(경정 1명, 경감 1명, 경위 63명, 경사 23명)을 경찰청으로 이체하며, 경찰병원 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운영을 위하여 경찰청의 일반직 41명(8급 7명, 9급 34명)을 경찰병원으로 이체하고, 지역의 치안역량 강화를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경찰청 원주경찰서, 충청남도경찰청 천안서북경찰서 및 경상북도경찰청 구미경찰서의 경찰서장 계급을 각각 총경에서 경무관으로 상향 조정하며, 치안 상황에 대한 대응 및 정책역량 강화를 위하여 경찰청 소속기관의 경정 50명을 총경으로 상향 조정하는 한편,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9155호, 2023. 1. 3. 공포, 2023. 7. 1. 시행)됨에 따라, 경상북도경찰청 군위경찰서를 대구광역시경찰청 대구군위경찰서로 변경하고,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19214호, 2023. 1. 17. 공포, 2024. 1. 18. 시행)됨에 따라, 전라북도경찰청의 명칭을 전북특별자치도경찰청으로 변경하며, 경찰청 소속기관에 여성청소년 수사 업무를 위하여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한 602명(경위 1명, 경사 160명, 경장 291명, 순경 150명)을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2023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의 : 기획재정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0000. 00. 00. ~ 00.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장제4절의 제목 중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

제58조제1항 및 제2항 중 “전라북도”를 각각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

제64조제2항 후단 중 “581명”을 “629명”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526명”을 “524명”으로 한다.

별표 1 중 “전라북도경찰청”을 “전북특별자치도경찰청”으로 하고, 같은 란의 전라북도경찰청의 위치란 중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하며, 같은 표의 비고 중 “전라북도경찰청”을 “전북특별자치도경찰청”으로 한다.

별표 2의 대구광역시 경찰청의 경찰서명란 중 “대구강북경찰서”를 “대구강북경찰서, 대구군위경찰서”로 하고, 같은 표 시·도경찰청명 중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하며, 같은 표 경상북도 경찰청의 경찰서명란 중 “영양경찰서, 군위경찰서”를 “영양경찰서”로 한다.

별표 3 중 경기도남부경찰청란 다음에 강원특별자치도경찰청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강원특별자치도경찰청	원주경찰서
------------	-------

별표 3 중 충청북도경찰청란 다음에 충청남도경찰청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충청남도경찰청	천안서북경찰서
---------	---------

별표 3 중 “전라북도경찰청”을 “전북특별자치도경찰청”으로 변경하고, 전북특별자치도경찰청란 다음에 경상북도경찰청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경상북도경찰청	구미경찰서
---------	-------

별표 4 중 총계 “1,827”을 “1,874”로 하고, 경찰공무원 계 “1,117”을 “1,205”로 하며, 총경 이하 “1,097”을 “1,185”로 하고, 일반직 계 “706”을 “665”로 하며, 4급 또는 총경 이하 “683”을 “642”로 한다.

별표 5 중 총계 “134,309”를 “134,326”으로 하고, 경찰공무원 계 “129,925”를 “129,942”로 하며, 경무관 “74”를 “77”으로 하고, 총경 이하 “129,827”을 “129,841”로 한다.

별표 6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장 제4절 제목, 제50조 제1항 및 제2항, 별표 1 및 별표 2 중 전북경찰청을 전북특별자치도경찰청으로 변경하는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중 경찰병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경찰병원	경찰청	경찰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및 그 가족, 경찰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사람과 의무경찰의 질병 진료에 관한 사항	648명
------	-----	--	------

■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별표 6]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제66조제1항 관련)

1. 경찰청

평가대상 조직

조직	정원
1) 생활안전교통국 2개 과	7명
2) 경무인사기획관 1개 담당관	2명
3) 수사기획조정관	1명
4) 수사기획조정관 1개 담당관	8명
5) 수사국 1개 과	2명
6) 형사국	1명
7) 국가수사본부 1개 담당관	6명
8) 국가수사본부 1개 과	1명
9) 미래치안정책국	1명

2. 경찰청 소속기관

가. 평가대상 조직

조직	정원
1) 서울특별시경찰청 수사차장	1명
2) 서울특별시경찰청 수사차장 1개 형사기동대 시·도경찰청 수사부장 11개 형사기동대	12명
3) 시·도경찰청 12개 생활안전부	12명
4) 경찰서 74개 범죄예방대응과	74명
5) 서울특별시경찰청 광역수사단	1명

6) 경기도남부경찰청 광역수사단	1명
7) 중앙경찰학교 교수부	1명

나. 평가대상 정원

업무	정원
1)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 업무(시·도경찰청)	90명
2) 교통사고 예방·단속·조사 업무(시·도경찰청)	16명
3) 강력범죄수사 업무(시·도경찰청)	100명
4) 교통사고 예방·단속·조사 업무(시·도경찰청)	163명
5) 사건수사 업무(시·도경찰청)	215명
6) 기록물 업무(시·도경찰청)	76명
7) 강력범죄수사 업무(시·도경찰청)	85명
8) 여성청소년수사 업무(시·도경찰청)	165명
9)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 업무(시·도경찰청)	69명
10) 교통사고 예방·단속·조사 업무(시·도경찰청)	26명
11) 범죄피해자 보호 업무(시·도경찰청)	41명
12) 수사지원 업무(시·도경찰청)	35명
13) 강력범죄수사 업무(시·도경찰청)	40명
14) 과학수사 업무(시·도경찰청)	90명
15) 디지털증거분석 업무(시·도경찰청)	43명
16) 과학수사 업무(시·도경찰청)	138명
17) 교통사고 예방·단속·조사 업무(시·도경찰청)	225명
18) 국유재산 관리 업무(시·도경찰청)	45명

19) 수사지원 업무(시·도경찰청)	6명
20) 여성청소년수사 업무(시·도경찰청)	60명
21) 사이버수사 업무(시·도경찰청)	163명
22) 지능범죄수사 업무(시·도경찰청)	53명
23) 범죄예방 및 순찰 업무(시·도경찰청)	196명
24) 강력범죄수사 및 우범지역 순찰 업무(시·도경찰청)	169명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절 부산광역시 · 대구광역시 · 인천광역시 · 광주광역시 · 대전광역시 · 울산광역시 · 경기도북부 · 강원특별자치도 · 충청북도 · 충청남도 · <u>전라북도</u> · <u>전라남도</u> · 경상북도 및 경상남도의 시 · 도경찰청	제4절 ----- ----- ----- ----- <u>전북특별자치도</u> ----- -----
제58조(하부조직) ① 부산광역시 · 대구광역시 · 인천광역시 · 광주광역시 · 대전광역시 · 울산광역시 · 경기도북부 · 강원특별자치도 · 충청북도 · 충청남도 · <u>전라북도</u> · <u>전라남도</u> · 경상북도 및 경상남도의 시 · 도경찰청에 공공안전부 · 수사부 · 생활안전부를 각각 둔다.	제58조(하부조직) ① ----- ----- ----- ----- ----- <u>전북</u> <u>특별자치도</u> ----- ----- ----- -----.
②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u>부산광역시</u> · <u>대구광역시</u> · <u>인천광역시</u> · <u>광주광역시</u> · <u>대전광역시</u> · <u>울산광역시</u> · <u>경기도북부</u> · <u>강원특별자치도</u> · <u>충청북도</u> · <u>충청남도</u> · <u>전라북도</u> · <u>전라남도</u> · <u>경상북도</u>	② ----- ----- ----- ----- ----- ----- <u>전북</u> <u>특별자치도</u> -----

및 경상남도의 시·도경찰청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경찰청의 소속기관(경찰병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
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③ (생략)

제64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생략)

② 경찰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행정안
전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총
경의 정원은 581명을, 4급 공무
원의 정원은 15명을 각각 그 상
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
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
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
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그 상
한으로 한다.

③ 제2항 후단에 따른 총경의
정원 중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
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경찰
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의 정원과 경찰서장
의 정원의 합은 526명을 그 상
한으로 한다.

-----.

③ (현행과 같음)

제64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현행과 같음)

② -----

-----.
----- 628명 -----

-----.

③ -----

----- 523명 -----
-----.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신 · 구 정원 대비 표

[별표 4]

경찰청 공무원 정원표(제63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	.	.	.	.	.
총	계	.	1,827	1,874	1,874	+47	
경	찰	공	1,117	1,205	1,205	+88	
경	찰	공	.	.	.		
경	찰	공	.	.	.		
총	경	이	1,097	1,185	1,185	+88	
하	이	하	706	665	665	-41	
일	반	직	.	.	.		
계	계	계	.	.	.		
4	급	또	683	642	642	-41	
는	는	는	.	.	.		
총	경	이	.	.	.		
하	하	하	.	.	.		

[별표 5]

경찰청 소속기관 공무원 정원표(제64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 <u>134,309</u>	• <u>134,326</u>	+17
경찰공무원 계	<u>129,925</u>	<u>129,942</u>	+17
•	•	•	
•	•	•	
경무관	<u>74</u>	<u>77</u>	+3
총경 이하	<u>129,827</u>	<u>129,841</u>	+14
•	•	•	
•	•	•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	
연 락 처	(044) 205 - 2371